

연금상담전문가(CPE) 교재 정오표-2023.08

권	쪽수	줄수	수정 전	수정 후	비고
1권	52	표2-1 하1	퇴직 후	퇴역직 후	용어수정
1권	52	하3	3,167 만	3,117 만	내용수정
1권	59	상12	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사람이 65 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사람	1996. 6. 30. 이전 출생자(65 세 이상)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	내용수정
1권	66	사례 하4	주택 및 상가별로 각각	주택, 상가 중 한 채에 한하여('22 년 부터, 저자주)	내용수정
1권	68	상12	분할연금 및 유족연금	분할연금	내용수정
1권	85	하2	기준소득금액에 대한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	기준소득금액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50%에 해당하는	내용수정
1권	91	박스 하1	$(0.05 \times 0.05 \times n \div 12)$	$(0.5 \times 0.05 \times n \div 12)$	내용수정
1권	98	표 2-12 상3	배우자	배우자(사실혼 배우자 포함)	내용수정
1권	98	상10	65 세에 연금수령을 개시하는 경우 66~70 세	65 세에 연금수령을 개시하는 경우 65~69 세	내용수정
1권	112	하5	(2023 년 539 만 원의 160%	(2023 년 539 만 원)의 160%	내용수정
1권	116	상2	조기퇴직연금 수령 시 감액률은 국민연금의 조기노령금액의 감액률과 동일하다.	조기퇴직연금 수령 시 감액률은 연 5%로서 국민연금의 연 6%와 차이가 있다.	내용수정
1권	117	표2-24 좌측 하단	(2 기간 산식에 의한 금액보다 큰 경우 2 기간 산식에 의해 연금액 산정)	(2 기간 산식에 의한 금액이 큰 경우 2 기간 산식에 의해 연금액 산정)	내용수정
1권	120	사례 상2	1994 년 1 월 1 일	1995년 1월 1일	내용수정
1권	121	사례 하6	$8.21 + 5.870 = 14.01$ 만 원	$8.21 + 5.80 = 14.01$ 만 원	내용수정

1권	121	사례 하3	26.84 만 원	19.94만 원	내용수정
1권	141	하6	비장애인으로 19 세가 된 경우	비장애인으로 25세가 된 경우	내용수정
1권	165	하2	공적연금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신고를 하여야 한다.	공적연금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신고를 하거나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.	내용수정
1권	167	사례 상1	2022 년 12 월 31 일까지 4,000 만 원을 납입하였고 2023 년 1 월 1 일 일시금으로 6,000 만 원을 수령하였다.	2018년 12월 31일까지 4,000만 원을 납입하였고 2019년 1월 1일 일시금으로 6,000만 원을 수령하였다.	내용수정
1권	214	하2	4,000만 원	4,500만 원	내용수정
1권	215	표3-10	5,500/4,000만 원 이하	5,500/4,500만 원 이하	내용수정
2권	205	상2	30만 2,000원	38만 2,000원	내용수정
2권	207	하4	$(500,000,000 - 250,000,000) \times$ $4\% \div 12 = 83\text{만 } 3,333\text{원}$	$(500,000,000 - 85,000,000 -$ $250,000,000) \times 4\% \div 12 = 55\text{만}$ 원	내용수정
2권	207	하3	$1,445,000+833,333=227\text{만 } 8,333\text{원}$	$1,445,000+550,000=199\text{만 } 5,000\text{원}$	내용수정
2권	207	하2	227만 8,333원	199만 5,000원	내용수정
2권	207	하1	초과하여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없다.	보다 낮아서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. 기초연금액이 25,000원으로 최저연금액 32,318원보다 낮아서 최저연금액을 수령한다.	내용수정
2권	211	하2	$103.24 \div (350 \times 23) = 1.28248\%$	$107.8891 \div (350 \times 23) = 1.34\%$	내용수정
2권	220	표 하3	이행률: 72.39%	이행률: 72%	내용수정
2권	222	하5	49.14만 원	45.14만 원	내용수정
2권	222	하3	49.14만 원	45.14만 원	내용수정
2권	222	하1	49.14=314.39만 원이다.	45.14=310.39만 원이다.	내용수정
2권	225	하8	3년 차이므로	4년 차이므로(57세=1년차)	내용수정
2권	225	하3	$(11-3) \times 1.2 = 2,250\text{만 원}$	$(11-4) \times 1.2 = 2,571.4\text{만 원}$	내용수정
2권	226	상8	150,000,000	100,000,000	내용수정

2권	226	상8	300만 원 x (18,000,000 ÷ 150,000,000) x 70% = 36만 원	300만 원 x (18,000,000 ÷ 100,000,000) x 70% = 37.8만 원	내용수정
2권	227	하4	2,400만 원	1,440만 원	내용수정
2권	235	상2	박일남(53세)씨는	박일남(55세) 씨는	내용수정
2권	248	상2	기본연금액은 연 442.2만 원이다.	기본연금액은 연 336만 3,670원이다.	내용수정
2권	251	하5	(700,000,000 - 135,000,000) x 4% ÷ 12 = 1,883,333원	(500,000,000 - 135,000,000) x 4% ÷ 12 = 1,216,666원	내용수정
2권	252	상2	450,000 + 1,833,333 = 2,283,333원	450,000 + 1,216,666 = 1,666,666원	내용수정
2권	255	표	연금소득공제 계산 오류	첨부1	내용수정
2권	256	표	연금소득(총연금액) 입력 오류	첨부2	내용수정
2권	260	상6	2013년	2012년	내용수정
2권	264	상5	따라서 연금수령연차는 1년차이다.	연금개시 가능일이 속하는 2022년이 1년차이므로 연금수령연차는 2년차이다.	내용수정
2권	264	표	△△증권 IRP의 연금수령연차: 1 첫 해 인출한도: 1,560만원 합계: 4,200만 원	△△증권 IRP의 연금수령연차: 2 첫 해 인출한도: 1,733만 3,333원 합계: 4,373만 3,333원	내용수정
2권	264	하11	연 4,200만 원(월 350만 원)	연 4,733만 3,333원	내용수정
2권	264	하7	1,560만 원을 인출할 수 있다.	1,733만 3,333원을 인출할 수 있다.	내용수정
2권	264	하1	46만 7,250원	46만 2,000원	내용 수정
2권	265	상4	1,560만 원이므로	1,733만 3,333원이므로	내용수정

첨부1. 제2권 p.255 표 수정

구분	금액	비고
연금소득(총연금액)	24,600,000	
연금소득공제	7,360,000	6,300,000 + 10,600,000 × 10%
연금소득금액	17,240,000	
인적공제	1,500,000	1명(본인)
과세표준	15,740,000	
한계세율	15%	
산출세액	1,101,000	과세표준 × 15% - 1,260,000
연금계좌세액공제	450,000	3,000,000 × 15%
표준세액공제	70,000	
결정세액	581,000	
지방소득세	58,100	
총납부세액	639,100	

첨부 2. 제2권 p. 256 표 수정

구분	금액	비고
연금소득	10,227,273	
연금소득공제	5,545,455	4,900,000 + 3,227,273 × 20%
연금소득금액	4,681,818	
인적공제	1,500,000	1명(본인)
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	700,000	
과세표준	2,481,818	
한계세율	6%	
산출세액	148,909	과세표준 × 6%
표준세액공제	70,000	
결정세액	78,909	
지방소득세	7,891	
총납부세액	86,800	